

영등포구의회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9. 7. 3.



行政委員會

(專門委員)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 2008년 1월 1일부터 상위법인 「호적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법」을 기초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 2008. 1. 1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 및 체납처분의 절차는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규정에 따름.(부칙 제2조)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1988년 5월 호적법에 의거 제정되어 호적신고 또는 신청을 지연할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 왔으나, 상위법령인 『호적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존치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 7. 3.

보고자 : 권 오 운

관 계 법령

□ 호적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17, 타법폐지]

호적법은 폐지한다.

□ 부칙 <제8435호, 2007.5.17>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호적법은 폐지한다. 다만, 2008년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회복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의 신고 및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통보는 종전의 「호적법」 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 및 제112조의2를 적용하되, 위 「호적법」 조항들을 적용할 때 「호적법」 제15조는 이 법 제9조로,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본다.